

부동산 분양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야 하며,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의 의거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균등하게 분담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.

과세대상	※ 관련법령: 『인지세법』 제1조, 제3조 제 1항 제 1호 및 제 8조 - 부동산 분양계약서는 인지세법 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 대상입니다. - 계약 당사자간 서명날인을 마친 때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납부방법 및 기한	- 분양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
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방법	- 수입인지 사이트(www.e-revenuestamp.or.kr)에서 구입 -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및 보관

※ 인지세 납부 이후 출력된 전자수입인지 원본의 변경(소인 등) 시, 인지세를 재납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■ 인지세 납부 금액

구분	인지세 세액		계약자 부담 금액(50%)	해당 주택형
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(분양계약서)	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	20,000원	10,000원	-
	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	40,000원	20,000원	-
	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	70,000원	35,000원	-
	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150,000원	75,000원	84A / 84B
	10억원 초과	350,000원	175,000원	108A / 108B / 129 / 166P / 183P / 197P

■ 전자수입인지 온라인 구매방법 안내

① 전자수입인지 (www.e-revenuestamp.or.kr) 사이트 접속 또는 네이버 검색창 "전자수입인지" 검색

②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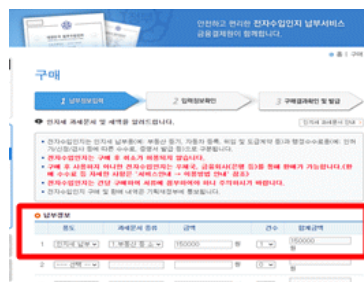


③ 로그인 후 구매클릭



④ 구매: 납부정보 입력

- 용도: 인지세 납부
- 과세문서 종류: 부동산 등 소유권 입력
- 금액: 해당금액 입력
- 건수입력 및 구매



전자수입인지는 출력물이 원본이므로 1회만 출력 가능

※ 재출력 불가
※ 사전에 테스트 출력하여 인쇄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



■ 전자수입인지 오프라인(우체국 및 은행 방문) 구매방법 안내

우체국 또는 은행방문
※ 방문 전 해당처 확인 요망
(신분증 지참)

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서 작성
※ 용도: 인지세 납부
(금액: 해당금액)

결제 및 전자수입인지 발급
※ 현금만 가능
(발급 후 계약서에 첨부 보관)